

★ ◎

본부장 방침 제75호

문서번호	공동체지원부-747
보존기간	5년
결재일자	2016.02.29
공개여부	비공개(6)
일상감사	대상아님

부원	파트장	공동체지원부장	주거복지처장	주거복지본부장
하경숙	이우호	정영석	서종균	02/29 이종언
협조	인사노무부장 이상석	예산자금부장 조한보	기획부장 전수현	
	남부지역주거복지단장 이영철	서부지역주거복지단장 김길상	중부지역주거복지단장 조래섭	
	북부지역주거복지단장 이상현	홍보부장 김영준		

입주민 일자리 창출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

## 2016년도 희망돌보미 사업 추진계획

**서울특별시 SH공사**

(주거복지본부 주거복지처 공동체지원부)

# 2016년 희망돌보미 사업 추진계획

SH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에게 환경관리, 취약계층 돌봄 등 일자리를 제공 하여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, 임대주택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를 통하여 입주민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## I 관련근거

- 2016년 주요사업계획 보고 【2016.01.19.사장 업무보고】

## II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입주민 일자리 창출 「희망돌보미」
- 사업기간 : 2016. 4.01. ~ 2016.11.30. (8개월)
- 소요인원 : 1,500명(돌보미 1,489명, 매니저 11명)
- 사업내용 : 임대아파트 및 다가구 환경관리, 취약계층 돌봄 등

### 《일자리 세부내용》

- ◆ 임대아파트, 다가구주택 공용부 청소 등 환경관리
- ◆ 홀몸어르신, 중증장애인,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돌봄
- ◆ 단지 내 방범활동
- ◆ 주거복지센터, 관리사무소 사무 행정 지원
- ◆ 기타 센터 및 단지 특성에 따라 발굴한 일자리

### ※ 사업 추진실적

연도	2011년	2012년	2013	2014년	2015년
계획인원(명)	658	697	760	785	1,000
채용인원(명)	732	769	833	838	940

### III

## 추진계획

#### 희망돌보미 채용 및 배치내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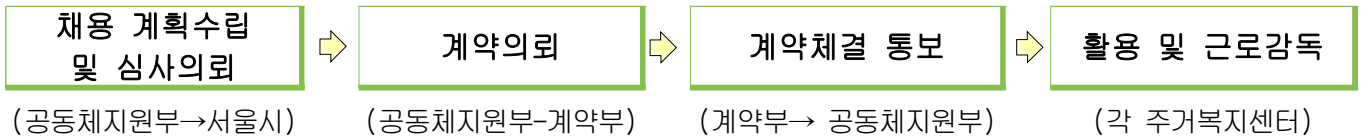
##### ○ 센터별 모집인원 및 배치내역

주거복지단 센터명	남부지역			서부지역		중부지역			북부지역			
	강남	송파	관악	강서	양천	성동	은평	마포	노원	동대문	성북	
합 계	1,500	395			341		349			415		
소 계	1,500	145	135	115	174	167	113	131	105	173	130	112
돌보미 등 (임대주택 배치)	1,489	144	134	114	173	166	112	130	104	172	129	111
돌보미 매니저 (센터 배치)	11	1	1	1	1	1	1	1	1	1	1	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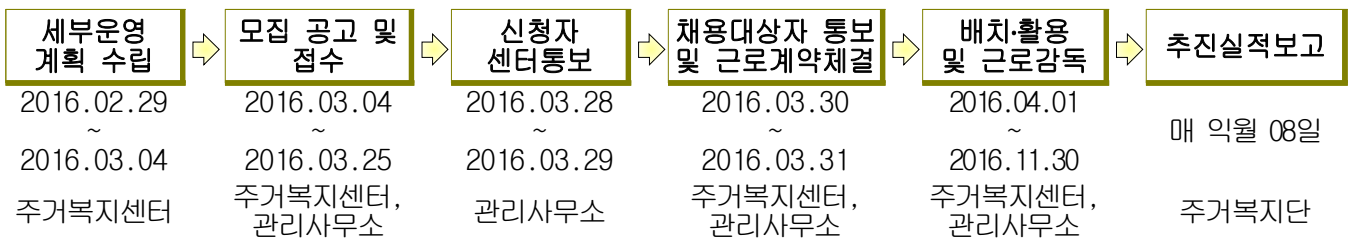
※ 배정 산출기준 : 센터별 임대주택(아파트, 다가구)관리 세대수 대비 차등 배정. 센터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# 추진일정

##### ○ 희망돌보미 매니저



##### ○ 희망돌보미



#### 분야별 모집 기준 및 근로조건

##### ○ 희망돌보미 매니저

구분	내용	
모집인원	11명	
지원자격	• 우리공사 희망돌보미 사업 매니저로 채용된 적이 없는 자 - 엑셀, 한글 등 전산업무 능숙자 - 4대보험 신고 등 직원 복리후생업무 경력자 우대	
근로조건	근로기간	2016. 4.01. ~ 2016. 11.30. (8개월)
	근무시간	주 5일(일 8시간)
급여	월1,470,000원 (세전 금액임) ※서울시 심사 및 계약과 계약의뢰 후 용역계약 시 조정 가능	

근무장소	SH공사 권역별 주거복지센터
업무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센터 희망돌보미 사업 담당자의 업무보조</li> <li>• 돌보미 근태점검(정기적 순찰), 근무일지 점검, 복리후생관리 등 행정업무 보조</li> <li>• 기타 센터 내 업무지원</li> </ul>
채용부서	공동체지원부
채용방법	파견근로자 채용기준에 의거 서울시 계약심사 및 계약부 의뢰
※ 2015년 희망돌보미 사업 일상감사검토의견 『희망돌보미 매니저 파견근로용역을 향후에는 희망돌보미 사업 계획부서(공동체지원부)에서 총괄하여 발주하는 방안 검토』에 따라 공동체지원부에서 총괄 발주예정	

## ○ 희망돌보미

구분	내	용
모집인원	1,489명	
지원자격	우리 공사 임대주택 입주인 중 근로 가능한 자 (1세대 1인 신청 가능)	
근로조건	근로기간	2016. 4.01.~ 2016. 11.30(8개월)
	근무시간	일 4시간 근무 (월 14일, 월 56시간 근무) ※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준수 - 단시간근로자 : 4주 동안(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)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
	급여조건	급여 : 월375,000원 (회사 부담분 고용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 포함) ※ 4대보험 관련 -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 희망여부 본인 확인 후 가입,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 아니며 산재보험은 사업장 의무가입 사항임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,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) -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: 미 적용 (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)
	근무장소	우리 공사 임대주택 (임대아파트 단지, 다가구, 희망하우징 등)
	업무내용	환경관리(임대아파트 단지, 다가구 등), 취약계층 돌봄, 방법활동, 사무지원(센터, 관리사무소), 기타 단지별 특성에 맞게 발굴한 일자리 등
채용부서	권역별 주거복지센터	
채용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단지별로 모집인원, 배치인원 결정</li> <li>• 신청서류 수합 후 채용기준 의거 순위부여하고 단지별로 순위 높은 순으로 선발</li> <li>• 채용인원 부족 시 타 단지 탈락자 중에서 순위 고려하여 선발</li> <li>• 중도 퇴사자 발생 시 대기자 명단에서 순위 고려하여 추가 채용</li> <li>• 채용순위 동일한 경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2015년까지 희망돌보미 사업 미 참여 횟수 높은 순, ②임대료(관리비)연체금액 많은 순, ③주민등록상 가족 수 많은 순으로 선정</li> </ul> </li> </ul>	
	채용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순위 : 2015년까지 희망돌보미 사업 미 참여자로서,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모집공고일 기준 임대료(관리비) 3개월 이상 체납자</li> <li>-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, 취업보호(지원) 대상자, 차 상위계층, 북한이탈주민, 한 부모가정, 다문화가정</li> </ul> </li> <li>• 2순위 : 2015년까지 사업 참여여부 불문하고, 요양보호사 등 취약계층 돌봄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하고, 동일 분야 지원한 자</li> <li>• 3순위 : 위 1순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, 2015년까지 사업 참여 경험이 전혀 없는 자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증빙서류 제출</li> <li>- 근무이력 조회 후 선발</li> </ul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4순위 : 2014년도 이전 사업 참여자</li> <li>• 5순위 : 2015년도 사업 참여자</li> </ul>
채용대상 제외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타재정일자리 참여자,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(1~5등급)</li> <li>• 기타 채용권자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</li> </ul>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령자 및 장애인 채용 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 업무수행 가능자 채용</li> <li>• 희망돌보미 신청 접수 시 사전 홍보철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인 주거단지가 아닌 타 인근단지로 배치 원칙</li> <li>- 지원 분야와 다른 분야로 배치될 가능성</li> <li>- 환경관리의 경우 아파트단지 외 다가구 배치 가능성</li> <li>- 임대료관리비 체납자는 지급 급여에서 25%~50% 의무적으로 징수</li> <li>-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채용 시 소득발생으로 수급권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</li> </ul> </li> <li>• 센터별 25%이상 취약계층 돌보미로 채용 및 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말벗 등 정서지원, 일상생활지원, 긴급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연계 등의 업무에 주력하고, <u>의료 행위에 준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도록 지도</u></li> </ul> </li> <li>•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규정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</li> <li>②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</li> <li>③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</li> <li>④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</li> <li>⑤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</li> <li>⑥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</li> </ol> </li> </ul>

## 부서별 추진업무

### 주거복지단

- 센터별 희망돌보미 운영상황 지도감독 등 총괄
- 센터별 희망돌보미 추진실적 수합 및 보고
  - 익월 08일까지 추진실적 보고 (보고양식 별도 통보 예정)

### 주거복지센터

- 희망돌보미 세부운영계획 수립
  - 관리사무소별 희망돌보미 분야별 수요조사 후 세부운영계획 수립
- 희망돌보미 모집공고 및 선발 배치 **【별첨1】**
  - 채용기준 의거 희망돌보미 선발 및 근로계약 체결 **【별첨4,8】**
- 희망돌보미 운영 관련 교육실시
  - 교육대상 : 사업 참여자(희망돌보미, 매니저), 관리사무소장 등
  - 교육내용 :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에 대한 안내,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교육

- 교육방법 : 희망돌보미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 교육방안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실시
- 희망돌보미 운영실태 관리 감독
  - 희망돌보미 업무 및 근태점검, 순찰일지 작성(월1회) 【별첨11】
- 희망돌보미 관련 행정업무 처리
  - 복리후생업무 관리(급여지급 및 산재보험 관리 등)
  - 주거복지단으로 월1회 운영실적 보고 (보고양식 별도 통보 예정)
- 희망돌보미 매니저 관리

## 관리사무소

- 단지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세부업무계획 수립 【별첨3】
    - 관리비 절감효과가 있는 업무 우선 배치
    - 환경관리, 취약계층 돌봄 업무 외에도 단지 내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
    - 작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형식적인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추진
  - 희망돌보미 근태점검 및 관리
    - 출근부·업무일지 작성 점검 철저 【별첨5】
    - 근무규칙, 업무내용, 입주인 응대요령, 민원사례 등 교육하여 민원발생 방지
    - 사업종료까지 안전교육,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지속적 교육
    - 경비원, 청소원 업무를 과도하게 부담시켜 민원발생 되지 않도록 유념
  - 임대료·관리비 체납자의 체납금 원천 징수액 산정
    - 매월 급여지급 전 체납금 중 일정금액 원천징수(정산)에 따른 합의서 작성 및 처리 【별첨8,9】
    - 3개월 이상 체납자 : 실 수령액의 50% 징수
    - 3개월 미만 체납자 : 실 수령액의 25% 징수
- ※ 체납금 정산 시 임대료(관리비) 연체료만 있는 경우 체납개월 산정 제외  
 징수금액 > 체납금액 경우 실제 임대료(관리비) 체납금액 한도 내에서 징수

### 《2015년 희망 돌보미 임대료·관리비 징수현황》

센터별	체납금액				수납금액				수납율 (%)
	세대수	계(a)	임대료	관리비	세대수	계(b)	임대료	관리비	
계	239	191,655,530	93,481,925	98,173,605	239	40,486,049	16,621,369	23,864,680	21.1

- 주거복지상담사 배치된 단지의 경우
  - 취약계층 돌보미 채용자 및 수혜자 관리를 주거복지 상담사가 전담하여 관리

- 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관계기관과 자료 공유하여 중복 수혜 방지
- 업무 특성상 노동강도가 세거나, 세대 내 근무의 경우 불미스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2인 1조 편성하여 투입
- 취약계층 돌보미 업무일지 작성 시 대상자 동호, 성명 및 업무활동내역 상세히 기록

○ 임차인대표회의 및 자생단체 등에서 희망돌보미 채용 및 활동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채용기준 등 명확한 안내

## □ 근무복 지급 및 관리

### ○ 지급(희망돌보미 사업 시작 시)

주거복지센터 → 각 관리사무소 → 사업 참여자

### ○ 회수 및 보관(희망돌보미 사업 종료 시)

사업참여자 → 관리사무소 → 주거복지센터

※ 주거복지센터는 사업 종료 시 차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회수 및 관리 철저

### 《 센터별 근무복 과부족 현황 》

구 분	계	남부지역			서부지역		중부지역			북부지역		
		강남	송파	관악	강서	양천	성동	은평	마포	노원	동대문	성북
' 15 잔여(a)	894	89	76	79	92	94	74	72	58	103	74	83
' 15년 소요(b)	1500	145	135	115	174	167	113	131	105	173	130	112
과부족(a-b)	△606	△56	△59	△36	△82	△73	△39	△59	△47	△70	△56	△29
' 16년 배부예정 수량	639	160			161		154			164		

### ○ 근무복 구매계획(분실, 손상분 추가구매)

- 구매수량 : 639개 (부족 606개, 예비33개)
- 구매방법 :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2조에 의거 사회적 기업 중 최저금액 견적입찰
- 적정수량 : 2016년 소요수량 + 예비분(각 센터별 3개씩)
- 지급방법 : 추가구매분은 11개 권역 주거복지센터로 배부할 예정

## □ 개선사항

### ○ 희망돌보미 급여 지급 및 매월 실적 보고 방법 개선

- 급여 전산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관리 전산화에 따라 실적 보고 방법 변경
- 희망돌보미 사업 실적 보고 양식 간소화 및 전산화
- 급여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지급방법 및 실적관리 데이터화
- 실적보고 방법 및 양식 급여시스템 개발 완료 후 별도 통보 예정

○ **희망돌보미 채용인원 확대**

- 주거복지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입주민을 위한 일자리창출 규모를 전년 대비 50% 확대 (1,000명 채용, 8개월 근무 → 1,500명 채용, 8개월 근무)

○ **다가구 세대에 대한 희망돌보미사업 홍보 강화**

- 다가구에 거주하는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 희망자의 일자리참여 기회제공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필요
- **관리가 취약한 다가구 세대의 관리지원 업무로 사업분야를 확대**하여 시행할 수 있는 적합한 기준의 일자리참여자 모집

○ **희망돌보미 근무시간 단축으로 고령층 참여기회 확대**

- 임대주택 입주민 분석 결과 취업이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근무시간을 월 60시간 미만으로 단축하여 고령층 참여기회 확대
- 취업취약계층인 고령자에게 일자리 제공하여 주거생활 안정 지원하고 일자리참여를 통해 노인우울증 및 자살예방에 기여

○ **취약계층에게 실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격기준 마련**

-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소지자 채용 우선순위 부여
- 취약계층 범위에 다문화가정 포함하여 일자리참여 및 서비스 수혜 대상 포함

○ **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입주민 관리비 절감 방안 마련**

- 청소원이 없는 소규모 단지 환경관리 업무에 투입하여 관리비 발생 억제
- 사업 운영기간 동안 단지 청소원 결원인원 발생 시 희망돌보미 인력으로 대체하여 관리비 절감

**IV** **소요예산**

**총 예산금액** : 4,883,702,361원

구분	인건비(월/원)	인원(명)	기간(개월)	소요예산(원)	비고
계	2,656,157	1,500	-	4,883,702,361	
매니저	2,252,067	11	8	198,182,281	계약부 계약 시 조정 가능
돌보미	404,090	1,489	8	4,673,520,080	고용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 포함
근무복 구매 등	-	-	-	12,000,000	부족, 훼손분, 기타

※ 산출근거

○ 매니저 용역비 : 매니저 용역비 산출근거 참조 **【별첨10】**



서울시 계약심사의뢰 및 계약부 계약의뢰 추진 후 실제  
용역계약 시 금액 변동 가능

- 희망돌보미 임금 : ' 16년 최저임금 고시액 6,030원×56시간=337,680원 **【별첨7】**  
→ 기본노무비 340,000원 + 교통비 35,000원 = 375,000원

예산과목 : 임대, 경비, 지급수수료 **【비용부서 : 공동체지원부】**

V

## 행정사항

협조부서 : 지역주거복지단, 권역별 주거복지센터

협조사항

- 희망돌보미 채용명단 제출 **【별첨2】** : 2016.04.06.까지 (권역별 주거복지센터)
- 매월 실적보고 : 매 익월 08일까지 (지역별 주거복지단)
  - ▶ 보고양식은 전산시스템 구축 후 별도 통보예정
  - ▶ 4월, 5월, 6월, 9월, 11월은 근무활동사진 포함
- 희망돌보미 임금지급 : 권역별 주거복지센터
  - 출근부에 의거 근무 월 익월 10일에 지급
  - 결근자는 결근일수 공제하고, 체납자는 일정 체납액 원천징수 후 지급
  - 퇴사자 경우 사직서 작성·제출

- 붙임
1. 희망돌보미 모집공고문
  2. 희망돌보미 선정자 명부
  3. 단지별 희망돌보미 추진계획안
  4. 희망돌보미 채용(보수)계약서
  5. 희망돌보미 출근부 및 업무일지
  6. 희망돌보미 근무상황일지
  7. 희망돌보미 급여산출서
  8. 희망돌보미 지급급여에 대한 체납 임대료(관리비) 정산 합의서
  9. 희망돌보미 매니저 급여산출 기초조사서
  10. 희망돌보미 근로상황 순찰일지
  11. 희망돌보미 매니저 출근부 및 업무일지. 끝.